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

2017 . 04 . 25 .

문서번호	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-1308	선임	국장	대표이사			
결재일자	2017.04.26.	04/25 오소백	04/26 정소익	04/26 이근		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본부장			
방침번호				04/26 박진배			

추진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30조, 자문기구 설치 - 「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운영 내부규정 제정(안)」(대표이사방침 제 3107호, 2016.10.13.) - 「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 및 운영 세부계획(안)」제정(안)(대표이사방침 제97호, 2017.01.12.) 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
사 업 비	(출연금, 회의운영비)		

※ 문서내용을 위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세요.

서울디자인재단
(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)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	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✓
	이 해 당 사 자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✓
	전 문 가 :	유 ✓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옴 브 즈 만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✓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	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✓
	기 타 :	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	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
	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✓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✓
	민 간 단 체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✓
	기 업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✓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	유 ✓ (자문위원 구성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관 련 단 체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✓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를 운영 내규 제정을 통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 및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내실있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준비하고자 함

1. 추진개요

■ 추진근거

-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30조, 자문기구 설치

제30조(설치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2장 10조, 자문위원회 설치

제2장 제10조(자문위원회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■ 추진목적

-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요 사업 기획 및 운영 자문

2.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

※ 【별지】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운영내규

1.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

■ 자문위원 구성

- 임기 : 3년 임기,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
- 구성 : 국내외 인사 총 6인 내외
- 대상자 :

1. 건축·도시·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
2. 국제교류, 전시기획, 홍보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4. 그 밖에 대표이사 및 총감독이 서울비엔날레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■ 자문위원 기능

- 서울비엔날레 중장기 비전 및 의제 발굴에 관한 자문
- 국내외 홍보 및 교류 지원
- 기타 서울비엔날레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

■ 위원 구성

서울비엔날레 자문위원 구성		
위원 명단	국내	-안상수(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) -이용우(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) -송인호(서울역사박물관 관장) -최효준(서울시립미술관 관장)
	해외	-장영호(중국 대표건축가, 전 MIT 건축학과 학장) -베리 버그돌(미국 컬럼비아대 교수, 전 MoMA 수석 큐레이터)

■ 자문위원회 운영방법

■ 회의 소집

- 수시회의
 - 대표이사, 운영위원장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또는 사무국의 요청
 -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
- 소집 절차
 -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
 -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
- 기타사항
 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가능
 -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지급
 - 회의록 작성 및 상신

■ 간사

- 간사 :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장
- 역할
 -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관리
 - 위원회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
 -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2.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자문위원회

■ 총감독 자문위원 구성

- 임기 : ~2017년도 12월
- 역할 : 홍보, 네트워킹 지원 및 직간접적 참여
- 구성 : 해외인사 총 4명

■ 총감독 자문위원 기능

- 서울비엔날레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
- 서울비엔날레 직·간접적 참여
- 기타 서울비엔날레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

■ 위원(안)

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자문위원		
위원 명단	해외	-라홀 메호르타(미국 하버드디자인대학원 도시디자인 계획 학과장) -리키 버렛(영국 런던경제대 사회학 교수) -사스키아 사센(미국 컬럼비아대 사회학 석좌교수) -카를로 라티(미국 MIT 센시블시티랩 디렉터)

※ 운영방법 및 간사 :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와 동일

3. 행정사항

-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 및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자문위원회 구성 (일정 협의 후 추후 보고 예정)

별지. 1.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운영내규(안)

붙임. 1. 「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운영 내부규정 제정(안)」(대표이사방침 제3107호, 2016.10.13.)

2. 「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 및 운영 세부계획(안)」제정(안)(대표이사방침 제97호, 2017.01.12.)

【별지】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운영내규(안)

제정 2016. xx xx

제1조(목적) 서울비엔날레 중장기 비전 수립 및 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가 위촉한다.

1. 건축·도시·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
2. 국제교류, 전시기획, 홍보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4. 그 밖에 대표이사 및 총감독이 서울비엔날레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③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원할 때
2. 질병,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서울비엔날레 중장기 비전 및 의제 발굴에 관한 자문
2. 서울비엔날레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
3. 서울비엔날레 직·간접적 참여
4. 국내외 홍보 및 교류 지원
5. 기타 서울비엔날레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간사) ①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는다. 대신 업무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된다.

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관리
2.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

3.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는 사무국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간사가 소집한다.

②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6조(위원회의 수당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